

● 제327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 】

의안번호 2193

### I. 개정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영옥 의원외 15명  
나. 제안일 : 2024. 10. 16.  
다. 회부일 : 2024. 10. 18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저출생 현상으로 아동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, 학업 스트레스, 또래 관계 문제, 복잡하고 빠르게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- 우울증, 불안 장애 등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, 학습 능력 저하, 대인관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, 정신질환이나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이어져 미래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

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.

- 또한,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및 낙인감·편견 등으로 인해,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, 이는 아동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.
- 아동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, 적성에 맞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,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.
-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지원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동 맞춤형 심리·정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또한,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2조2제1항)
-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12조2제2항)
-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관련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2제3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 (2024.10.23.~10.27.) 결과 : 의견없음

## 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# 1 개정안의 개요

- 저출산 문제로 아동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우울증을 진료받은 18세 미만 아동수는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6~11세 아동 중 우울증을 진료받은 아동수는 2018년도 1,849명에서 2022년 3,541명으로 91.5% 급증하였음<sup>1)</sup>.
-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,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.

### 2 주요사항 검토

#### □ 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(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
#### 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 ① 시장은 「아동복지

1) 김병규 기자, 연합뉴스, '어린이 우울증 5년새 갑절로...5년간 초중고생 822명 극단선택', 2023-09-27

	법」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-	---

-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2)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2조의2제1항은 이러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함으로써 법적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□ 지원사업 (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 ② 시장은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 아동 심리·적성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.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

2)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
	비스 연계 3. 아동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·정보제공 4.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5.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 6. 그 밖에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-	--

-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의2<sup>3)</sup>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
  - 2023년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심리·정서 지원정책이 부족하고 기존의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현실적 제약이 있음이 지적되었음<sup>4)</sup>.
- 안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△아동 심리·적성 진단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진단프로그램, △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, △보호자 상담 및 교육 제공, △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

3) 「아동복지법」 제11조의2(아동정책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“아동정책영향평가”라 한다)하고,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4) 서울시여성가족재단(‘23.7~’23.12.),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, p.212.

맞춤형 아동 심리 지원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- 현재 아동의 심리·정서 서비스는 학교<sup>5)</sup>나 고위험군 대상의 지역 정신건강 전문기관<sup>6)</sup>에서 주로 담당해옴에 따라 일반 아동에게는 검사 후 충분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아 공급자 중심의 성격이 강하고, 위클래스(교육청)의 경우 아동 수 대비 교사 수가 적고 외부 상담기관의 이용횟수가 한정되어 서비스의 양과 질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<sup>7)</sup>.
- 따라서 아동의 심리·정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충분히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(아동·보호자)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□ 지원사업 (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)

- 안 제12조의2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--

5) Wee클래스(학교內, 서울 기준 초등학교 中 202개소), Wee센터(교육청, 서울 기준 26개소) - 학교부적응, 학교폭력 등 관련 개인상담 및 치료(「위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)

6)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서울 기준 25개소) - 개인상담(일탈 등) 및 복지지원(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), 정신건강복지센터(서울 기준 25개소) - 중증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상담 및 치료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)

7) 서울시여성가족재단(‘23.7~’23.12.),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, p.221.



### 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안
<신    설>	제12조의2(아동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)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체계적인 아동 심리·정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, 이를 위해 안 제12조의2제2항의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.

### 3    종합의견

- 저출산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아동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 등 우울이나 불안 등을 겪는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인력 및 인프라 확충과 상담·치료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등 대책 강화 마련이 요구되어 왔음.
-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.
- 아울러 기존의 학교나 정신건강 전문기관의 기능을 상호보완하며

이용자(아동·보호자)가 양질의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민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.